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52
----------	------

발의연월일 : 2024. 5. 2.
발의자 : 안영호, 정재환, 이명녀,
김도운, 문희성, 박경흠,
문기호

1. 제정이유

현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고, 구 금고의 지정에 대한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금고지정의 방법(안 제3조)
- 다. 금고지정의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 마. 금고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평가결과의 공개(안 제10조)
- 사. 금고업무의 약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아. 금고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자. 협력사업비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4. 4. 26. ~ 5. 1.(5일간)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금고지정의 방법)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의 금고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는 해당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금고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구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금고 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른 금고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배우자가 심의·평가 대상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심의·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금고지정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 운

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의한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하고,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금고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금고를 새로 설치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9조제5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

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small>※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small>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small>※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small>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5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 (건전성, 1점) <small>*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small>	(17)
		25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의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5)
	마. 정기에금 예치기간 경과 후 적용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6)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
		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small>*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small>	(2)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건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다. 구의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마. 정기에금 예치기간 경과 후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 예치기간 경과 후 해지된 시점까지의 적용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가능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 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관 련 법 규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3. 작성자

- 소 속: 세무1과
- 직 급: 지방세무주사
- 이 름: 손영일
- 연락처: 290-3352